

15. 請約預金 實施地域 擴大

資料提供：建設部

- 건설부는 '92. 6. 1부터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이 확대된다고 발표하였다.
 - 추가시행지역 : 경기도 포천군
- '91. 8. 1 군지역까지 청약예금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개정한 이후 추가실시지역은 다음과 같다.
 - '91. 10. 1부터 시행중 : 경기도 광주군·용진군, 충북 옥천군 충남 온양시·공주시
 - '91. 11. 1 시행 : 충북 괴산군, 충남 연기군
 - '91. 12. 1 시행 : 경남 삼천포시
 - '92. 1. 1 시행 : 경기도 김포군, 충남 금산군
 - '92. 2. 1 시행 : 경기도 오산시
 - '92. 4. 1 시행 : 경기도 파주군
 - '92. 5. 1 시행 : 충남 서산시, 경기도 이천군
 - '92. 6. 1 시행 : 경기도 포천군
- 이로서 청약예금 실시지역은 이미 시행중인 73개시군에 1개군이 추가됨으로써 74개시군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 청약예금 실시여부는 시장·군수의 판단에 따라 시행케되는 것으로 청약예금이 실시되면 해당첨제한규정(국민주택 10년, 민영주택 5년)이 적용되며 민영주택은 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순위별로 청약을 받게 된다. 다만 청약예금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약은 1순위가 발생하는 청약예금실시일로부터 2년후에 시행케된다.